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 내용	체류확인서 열람 []	체류확인서 교부 []
-------	------------------	------------------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입증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의3제2항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5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위임한 경우 위임한 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 상황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임장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유의 사항

1.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신분증명서 상에 표기된 성명을 써야 합니다. 다만, 구술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2. 법인·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3. 동일 신청자가 동일 입증서류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외국인 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외국인 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